

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장제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16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6. 1.

발의자 : 장제원 · 여상규 · 김경진
원유철 · 이채익 · 김영우
김현아 · 박덕흠 · 박성중
유재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,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.

이에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(안 제9조제1항제10호).

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
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10호 중 “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11. ~ 16. (생략)

② · ③ (생략)

11. ~ 16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